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대상 확대 》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83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제220608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대상 확대(안 제29조의2제1항)	2

I.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제220608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9.

다. 회 부 일 : 2024. 12.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촉진에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우수 인재의 지역 재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유출된 사람도 채용의무 대상 인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사람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3. 검토의견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대상 확대(안 제2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 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단서 삭제> 1. 해당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② ~ ⑥ (생략)	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함)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

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9조의2제1항1) 본문에 따라 지역인재는 ①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②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2)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지역인재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업 이후 지역으로 재유입되어 일하는 이른바 ‘U턴 인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전공공기관등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대함과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지역으로 재유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이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는 경우 그 사람은 이전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및 정서적 유대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정착 및 가족 동반 이주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됨.

한편,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³⁾·공공기관 채용 등에 도입되어 있음.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특히, 교육부 소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2024. 8. 14. 시행) 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⁴⁾되었음.

지역인재의 기준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 출신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서, 「지방대육성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⁵⁾되어 있음.

두 개의 법률 중 어느 하나의 법률만 개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취업 및 채용 부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대육성법」이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범위에 있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보다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두 개의 법률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및 제안자: 2201096, 이종배의원등 10인

- 주요내용 :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함.

【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 상 지역인재 채용제도 차이 】

구분	혁신도시법	지방대육성법
채용비율	100분의 30	100분의 35
채용대상	<u>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 정인 사람</u>	<u>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한 사람</u>
채용기관	<u>이전공공기관등</u>	<u>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u>
기타사항		<u>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 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 용한다.</u>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U턴인재’는 바람직하나, U턴인재 인정조건이 엄격하고 지역대학의 반발 등이 우려되므로 의무채용 비율, 광역화 범위 등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은 지역인재 대상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가능성, 관련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심사경과, 지방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과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90